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1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삼성클래식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혼합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2.3.2

3. 정정사유
- 전환형 연결펀드 명칭 변경(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 →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)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VaR 및 위험등급(3 → 2등급)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

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공통	**- 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**	전환형 연결펀드 명칭 변경 **-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**
표지	투자위험등급: **3등급(다소 높은 위험)**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	투자위험등급: **2등급(높은 위험)**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정 정 전</th><th>정 정 후</th></tr>
<tr><td></td><td>액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td><td>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요약정보</td></tr>
<tr><td>투자비용
투자실적 추이
운용전문인력</td><td>-</td><td>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전환절차 및 방법</td><td>-</td><td>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/tr>
<tr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td><td><table><tr><td>변경시행일</td><td>변경 사항</td></tr><tr><td>(추 가)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d>변경시행일</td><td>변경 사항</td></tr><tr><td>2026.11.20</td><td>투자위험등급 변경 (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5. 운용전문인력</td><td>-</td><td>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td><td>라. 전환형 구조
-</td><td>라. 전환형 구조
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td><td>가. 투자대상
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
(추 가)

※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),2),4)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.
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),2),4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※ 위의 1),2)의 투자의 합(양도</td><td>가. 투자대상
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
5) 증권 투자(50% 초과): 삼성클래식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및 삼성강국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에 대한 투자
*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

※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),2),4),5)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.
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),2),4),5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(삭 제)</td></tr>
</table>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	성 예금증서는 제외)에 대한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함. 다만,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※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 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. 투자 제한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-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(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)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가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	(삭 제) 나. 투자 제한 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(삭 제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**나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** **다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** **라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** **마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**	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**6등급 중 3등급**에 해당되는 **다소 높은 위험**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2)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**24.57%** 입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**6등급 중 2등급**에 해당되는 **높은 위험**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2)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**47.89%** 입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	다. 전환 **-**	다. 전환 **업데이트**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**업데이트**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**업데이트**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**업데이트**